-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6. 6. 19(월)
제250회 임시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6년 6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충청북도임시회

○ 2006. 6. 14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2005.8.4제정, 2006.1.1부터 시행)에서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안제4조~안제9조)

- 위원 구성 : 7인 이내
  · 위원장 : 복지환경국장
  · 위　원 : 민간전문가 3명 이상
- 기 능 :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등 심의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김재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함은 기금 운용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므로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인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을 명문화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 “3호”를 “4호”로 하며,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24호

제안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제 안 자 : 이기동 의원외 4인

□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인 “기금 운영의 성과분석”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안 제6조 “3호”를 “4호”로 하며,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3호”를 “4호”로 하며, 안 제6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신설)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 2.(개정안과 같음) 3.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4. (개정안 3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기금사업) ①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6의2. 식품산업진흥사업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